

## Issue Comment

2017. 3. 17

# 삼성증권 016360

## 발행어음 사업 인가 1년간 지연



###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098-6670

goenkim@meritz.co.kr

### 삼성생명 기관경고로 발행어음 등 신규사업 인가 1년간 금지

전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자살보험금과 관련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영업 일부 정지(3개월)에서 기관경고로 완화.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기관경고로 신사업 진출이 1년간 제한됨. 3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초대형 IB 관련 발행어음 사업이 1년 후인 18년 3~4월로 지연될 전망

### 일부 영업정지 시 신규사업 인가 3년간 금지 대비 완화되었으나

영업정지의 경우 신규사업 인가가 3년간 금지되기 때문에 기존 안보다는 완화된 상황.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증권사가 3분기 중 관련 사업을 시작할 예정에 있어 수익화가 늦어지며 시장 경쟁에 뒤쳐질 가능성 존재. 다만, 발행어음 사업은 판매보다 운용을 위한 투자 자산 발굴이 더욱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9개월 정도의 시기적인 지연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3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시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3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3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고은)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